

헌법 제2편 정치

현 행	개정 안	개정이유
제2장 교회 제10조 지교회의 설립 공동예배로 모이는 전도처 또는 기도처에 세례교인(입교인) 15인 이상이 있어 지교회를 설립코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	제2장 교회 제10조 지교회의 설립 공동예배로 모이는 전도처 또는 기도처에 세례교인(입교인) <u>중 18세 이상인자가</u> 15인 이상이 있어 지교회를 설립코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 <u>노회의 허락을 받아 예배 장소를 공유할 수 있다.</u>	1. 교회 설립기준 세례교인 중 유아세례, 아동세례 교인들을 교회 설립 세례교인 기준으로 삼을 경우 제직회, 공동의회 등 교회 기능에 어려움이 있어 공동의회 회원 자격이 있는 자로 기준하여 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함. (제106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33번 / 공동의회 회원으로 교회 설립 가능하다고 해석함) 2. 교회 설립 후 건물 임대료 등으로 인해 목회 활동 등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 장소를 공동사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제106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23번 / 공유교회 설립가능하다고 해석함)
제3장 교인 제19조 교인의 자격정지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제3장 교인 제19조 교인의 자격정지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u>단, 교회 분립 개척을 위해서 1년간 파송할 수 있고,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u>	교회 분립 개척을 돕기 위해 본 교회에서 파송된 향존직 등에 대한 파송 기간 제한이 없어, 분립 교회에 계속 있다가 본 교회로 돌아올 경우 이에 대한 다툼이 있어 교회 분립 개척 파송기간을 정하고자 함. (제106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22번 / “분립교회 파송장로의 시무”)

제5장 목사 제27조 목사의 칭호 7. 교육목사는 위임(담임)목사를 교육분야에서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청빙에 관한 규정은 헌법 정치 제28조 4항을 준용하고 연임청원은 헌법시행규정 제18조(부목사, 전도사의 연임청원)를 준용한다. [신설 개정 2018.12.20] 8. 원로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목사로서 시무하던 목사가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에 은퇴 청원을 할 때나 은퇴 후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목사다. 원로목사는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 예우는 지교회의 형편에 따른다. [개정 2012.11.16.]	제5장 목사 제27조 목사의 칭호 7. 교육목사는 위임(담임)목사를 교육분야에서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u>청빙에 관한 규정은 헌법 시행규정 제20조의 2에 근거하고</u>, 연임청원은 헌법시행규정 제18조(부목사, 전도사의 연임청원)를 준용한다. [신설 개정 2018.12.20.] 8. 원로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목사로서 시무하던 목사가 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에 은퇴 청원을 할 때나 은퇴 후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목사로 <u>조기은퇴시에도 적용된다.</u> 원로목사는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u>노회(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에 보고하고</u> 그 예우는 지교회의 형편에 따른다. [개정 2012.11.16.]	교육목사 청빙에 대한 사항이 헌법 정치 제28조 제4항 부목사 청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헌법시행규정 제20조의 2에 교육목사 청빙 및 연임청빙에 의한 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따르도록 개정하고자 함. 원로목사 예우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원로목사 예우를 부담하는 해당 교회에게 자율권을 부여 함으로써 원만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회 허락을 보고로 개정하고자 함.
제10장 당회 제71조 당회가 비치할 명부	제10장 당회 제71조 당회가 비치할 명부 〈신설〉 <u>10. 교인자격정지 명부</u>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정치 제14조 ‘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 개정안대로 동일하게 적용함.
제11장 노회 제73조 노회의 조직 4. 선교목사가 해외에서 시무하는 교회의 관리를 위하여 권역별 선교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의 조직과 기능 등은 총회 규칙으로 정한다. 단, 목사고시의 시행 및 목사 안수와 총회 총대 파송은 할 수 없고 위원장(대리로 서기)은 총회 연권회원이 된다. [신설 개정 2012.11.16]	제11장 노회 제73조 노회의 조직 4. 선교목사가 해외에서 시무하는 교회의 관리를 위하여 <u>해외에 선교노회</u>를 둘 수 있다. 이의 조직과 기능 등은 총회 규칙으로 정한다. <u>단, 목사고시의 시행 및 목사 안수는 총회 제반규정에 따른다. 총회 총대 파송은 할 수 없고 노회장과 서기는 총회 연권회원이 된다.</u>	해외 본 교단 소속 교회를 타 교단 목회자가 인수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재산권 보호 및 지속적인 목회자 양성, 소속 지 교회의 장로 선택 및 임직 등을 통해 본 교단 선교목사가 해외에서 원활하게 교회를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제106회기 총회 세계선교부 수임안건 제출)

제12장 총회 제88조 총회의 회집 및 회원권	제12장 총회 제88조 총회의 회집 및 회원권 〈신설〉 4. <u>총회의 회기(다음해 9월 정기 총회까지)를 마치지 못하고 총회 개최 연도 연말까지만 시무 후 정년으로 은퇴하게 되는 경우는 총회 총대로 파송할 수 없다.</u>	총회 당해연도 연말에 은퇴하는 사람은 총회참석 후 3개월 정도 활동하고 정년 은퇴하므로 이로 인해 총회와 노회의 업무 효율성이 낮아지고 소모적인 행정 처리 과정이 반복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총회 정책기획 및 기구개혁위원회 청원사항, 2023. 3. 31.)
제13장 회의 및 기관, 단체 제90조 공동의회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동의회 회원은 그 지교회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중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 5.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당회가 제시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 ③ 직원 선거 ④ 상회가 지시한 사항	제13장 회의 및 기관, 단체 제90조 공동의회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동의회 회원은 <u>시무교역자와</u> 그 지교회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중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 5.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당회가 제시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u>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전년도 준하여 지출한다</u>) ③ 직원 선거 ④ 상회가 지시한 사항	담임목사는 공동의회 사회권만 있고, 결의권, 투표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교회 시무교역자들에 대한 공동의회 회원권에 명분규정이 없어 이로 인한 다툼이 발생하는 바 이를 해소하고자 함. (제106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43번 / “제직회, 공동의회 결의권 및 회원권 여부”) 코로나19 등 감염병 및 교회 분쟁 등으로 공동의회를 할 수 없을 경우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국가재정법을 준용하여 개정하고자 함. (제105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13번 / “예산 불확정시 예산집행” 제104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33번 / 국가재정법 제55조 “예산불확정시의 예산집행”)

6. 공동의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 과반수로 결의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인선은 모두 이와 같다. [개정 2012.11.16.] 7. 공동의회의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	6. 공동의회의 결의는 <u>공동의회 의장을 포함하며</u>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 과반수로 결의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인선은 모두 이와 같다. [개정 2012.11.16] 7. 공동의회의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 <u>단, 당회가 없거나 당회 서기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였을 경우 공동의회에서 정할 수 있다.</u>	담임목사는 공동의회 사회권만 있고, 결의권, 투표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교회 시무교역자들에 대한 공동의회 회원권에 명분규정이 없어 이로 인한 다툼이 발생하는 바 이를 해소하고자 함. (제106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43번 / “제직회, 공동의회 결의권 및 회원권 여부”) 당회서기가 공동의회 서기를 겸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회를 구성할 수 없거나, 질병, 여행, 기타 사유로 공동의회를 참석할 수 없을 경우 공동의회 서기를 임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제106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47번 / “당회폐지와 권고사임”)
--	---	---